

공고 제 1 호

## 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 
공고합니다.

2022년 01월 10일

강동동장 인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강 *원	강 *원 1965-12-28	울산광역시 북구 정자7길 (정자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2-01-10
박 *호	박 *호 1976-10-10	울산광역시 북구 강동산하5로 (산하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2-01-10